

의 안 번 호	제 호	의 결 사 항
의 결 연 월 일	2020. . . (제 회)	

결 혼 중 개 업 의 관 리 에 관 한 법 률
시 행 령 일 부 개 정 령 안

제 출 자	국무위원 ○○○ (여성가족부장관)
제출 연월일	2020. . .

법 제 처 심 사 전

1. 의결주문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별지와 같이 의결한다.

2. 제안이유

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시 중개업자가 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수료하는 것을 명시하는 한편, 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제25조(손해배상책임 보장) 제2항 신설 및 제3항 개정에 따른 후속 시행령 조항을 정비하기 위함

3. 주요내용

- 가. 법 시행령 제2조(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)에서 국제결혼중개업 등록 신청일 기준 “최근 3년 이내”에 교육을 이수할 것을 요건으로 함(안 제2조 제1호)
- 나. 법 시행령 제6조(보증보험의 가입) 제1항에서 규정한 “법 제25조제2항”을 “법 제25조제3항”으로 개정
- 다. 법 시행령 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 제1항에서 규정한 “법 제25조제3항”을 “법 제25조제2항”으로 개정

4. 주요토의과제

없 음

5. 참고사항

가. 관계법령 : 생략

나. 예산조치 : 별도조치 필요 없음

다. 합 의 : 해당없음

라. 기 타 : 1) 신·구조문대비표, 별첨

대통령령 제 호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

결혼중개업의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제1호 중 “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”을 “신청일 기준 최근 3년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”으로 한다.

제6조제1항 중 “법 제25조제2항”을 “법 제25조제3항”으로 한다.

제7조제1항 중 “법 제25조제3항”을 “법 제25조제2항”으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영은 공포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 · 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) 1. <u>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</u> 1의2. (생략) 2. (생략) 3. (생략)	제2조(국제결혼중개업 등록기준) 1. <u>신청일 기준 최근 3년 이내에 법 제24조에 따른 교육을 받을 것</u> 1의2. (현행과 같음) 2. (현행과 같음) 3. (현행과 같음)
제6조(보증보험의 가입) ① 결혼 중개업자는 법 제3조 또는 법 제4 조에 따라 신고 또는 등록을 하려 면 법 <u>제25조제2항</u> 에 따라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금액을 보장하 는 보증보험을 가입하여야 한다. ② (생략) ③ (생략)	제6조(보증보험의 가입) ① ---- ----- ----- ----- <u>제25조제3항</u> ----- ----- -----.
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 ① 법 제 <u>25조제3항</u> 에 따라 결혼중개와 관 련하여 손해를 입은 이용자는 결 혼중개업자가 손해배상을 하지 아 니한 경우에는 보증보험금의 지급 을 청구할 수 있다. ② (생략) ③ (생략)	제7조(보증보험금 지급) ① <u>법 제 25조제2항</u> 에----- ----- ----- ----- ----- -----.
	② (현행과 같음) ③ (현행과 같음)

〈 의안 소관 부서명 〉

여성가족부 다문화가족과	
연 락 처	(02) 2100 - 6370